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검 토 보 고 서

2026. 11. 16.(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6. 11. 10.

○ 회부일 : 2026. 11. 12. (의안번호 : 26-144)

2. 제안이유

○ 상위법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 제정 목적 및 정의, 운영원칙(안 제1조～제3조)

○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제5조)

○ 위원 정수, 자격 및 선정·위촉(안 제6조～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의무, 해촉(안 제10조～제13조)

○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 운영(안 제14조～제21조)

○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제32조)

○ 행정·재정적 지원 및 협조(안 제33조～제35조)

○ 감독·보험·운영세칙(안 제36조～제38조)

○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별표1, 별표2)

○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등(부칙 안 제1조～제5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법」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입법예고 : 2026. 10. 15. ~ 2026. 11. 4. (의견제출 있음)

5. 검토보고

1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관계법령 및 입법절차 검토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자치사무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 자치회관 운영체계와 연계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권한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주민총회 의결, 행정사무 위탁, 재정지원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방의회의 법정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해촉, 주민총회 운영, 골목상권 지원, 생활안전 민원 처리, 재정지원 및 주민자치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 집행부는 관계 법령과의 적합성, 행정·재정적 여건 및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의견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일부 사항은 향후 운영세칙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특히 마포구의회 주민자치회 연구모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규칙 및 동별 운영세칙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 동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다만,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④ 주요 개정내용 및 조문

구분	주요내용	관련 조문
총칙	목적, 정의 및 운영원칙	안 제1조~제3조
주민자치회 설치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제5조
위원 구성	위원 정수, 자격, 선정 및 위촉	안 제6조~제9조
위원 관리	임기, 의무 및 해촉	안제10조~제13조
주민자치회 운영	회의, 주민총회, 자치계획 등	안제14조~제21조
자치회관 운영	시설, 프로그램, 사용료및 수강료	안제22조~제32조
행정·재정 지원	지원, 관계기관 협조 및 정보공개	안제33조~제35조
감독 및 운영	감독, 보험 및 운영세칙	안제36조~제38조
부칙	관련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조

⑤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

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제5조)

○ 주민자치회를 동 단위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의 중심 조직으로 설치하고,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및 지역 현안

협의 등의 기능을 부여한 것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민자치회의 기능 중 민원 처리 및 지역 현안 협의 등은 동장과 구청장의 행정권한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자치회의 협의·자문 기능과 행정기관의 집행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위원의 구성 및 선정(안 제6조~제9조)

○ 주민자치회 위원을 3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공개모집 비율을 60% 이상으로 정하며, 공개추첨과 성별 구성 기준을 마련한 것은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위원 정수의 상한이 없고 최소 정원인 30명에 미달하는 경우의 구성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동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정수와 최소 정원 미달 시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10조~제13조)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을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특정인의 장기 재임을 방지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위원 모집인원이 부족한 경우 연임 제한을 초과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은 반복 적용 시 연임 제한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직무태만 등 일부 해촉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촉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

여 등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안 제19조~제20조)

○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자치계획과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논의하도록 한 것은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민총회 의결이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이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결사항의 효력과 행정적 처리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전투표 및 온라인 참여에 따른 중복투표 방지, 주민 자격 확인 및 투표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자치회관 운영 및 사용료(안 제22조~제32조)

○ 자치회관 운영에 주민자치회의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민자치회의 심의권한과 동장의 시설관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강료 수입·지출 및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별표 1의 수강료 환급규정 중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7일 이내 서면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청기간 경과 시 환급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용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6. 행정 · 재정적 지원 및 감독(안 제33조~제38조)

○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교육, 감독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간사 및 사무국 운영비, 위원 활동수당 등은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지원 범위와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산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기존 위원회 폐지 및 경과조치(부칙 제2조~제5조)

○ 기존 동 민관상생위원회 및 특별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주민자치회로 통합하는 것은 유사·중복 조직의 정비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해촉하도록 한 경과조치는 신뢰보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자치회 구성 이전의 업무 공백과 처리 중인 안건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별 주민자치회 구성 시기의 편차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단계별 추진일정과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⑥ 비용추계 종합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14억 4,320만원의 재정지출이 예상되며, 2차년도부터 연간 3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원 활동수당, 간사 및 사무국 운영비, 주민총회 개최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와 연도별 비용 증가 원인

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민관상생위원회 폐지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신규 소요액을 비교하여 실질적인 추가 재정부담을 검토하고, 단계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자치회관 운영체계와 연계하는 한편, 유사·중복되는 주민협의기구를 정비하여 주민참여 확대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과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등은 주민대표성과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위원 정수 및 선정절차, 연임 제한의 예외, 해촉 기준, 주민총회 의결의 효력 등 일부 규정은 시행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나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과 마포구의회 주민자치회 연구모임의 간담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 안건 제안권, 해촉 절차의 공정성, 주민총회 운영의 투명성 등은 향후 시행규칙과 운영세칙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존 동 민관상생위원회 등의 폐지에 따른 위원 임기 종료, 업무 및 기록물 인계, 주민자치회 구성 이전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과조치와 전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정적 측면에서는 향후 5년간 총 14억 4,3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주요 운영경비의 산출근거와 기존 위원회 폐지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조례안 심사 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면서도 행정적 책임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